

의정부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나226924(본소), 2021나226931(반소) 판결
[공사대금반환 등 청구 · 공사대금]

재판경과

의정부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나226924(본소), 2021나226931(반소)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12. 15 선고 2021가단100390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장욱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B

변론 종결2022. 11. 24.

판결 선고2023. 1. 12.

제1심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12. 15. 선고 2021가단100390(본소),
2021가단100406(반소)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1.부터 2021. 12. 1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2.부터 2023. 1.

- 1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2/5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12.부터 조정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38,458,044원 및 이에 대하여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7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12.부터 조정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2쪽 19행부터 제3쪽

1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기지급 공사대금 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 중 15,300,000원(= 화장실공사비 5,000,000원 + 계단 등의 공사비 6,500,000원 + 복층바닥공사비 1,500,000원 + 복층도배 및 도장 공사비 2,300,000원) 상당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이하 '원고 주장의 미이행 공사'라 한다)를 마무리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초과지급된 8,500,000원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5, 6, 7, 9, 10, 12, 14, 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첨부된 견적서의 공종 란에 '토공사 및 지정공사, 철골공사, 판넬공사, 내부마감공사, 설계 및 인허가'만이 기재되어 있어 원고 주장의 미이행 공사가 이 사건 공사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점, ② 이 사건 공사계약서의 특약사항 란에 '내부 인테리어 공사는 별도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내부 인테리어 공사는 이 사건 공사에서 제외되거나 혹은 내부 인테리어 공사대금은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인테리어 공사'라는 공사명으로 G회사에게 원고 주장의 미이행 공사 등을 도급주었는바, 원고 주장의 미이행 공사는 이 사건 공사에서 제외되었거나 원고 주장의 미이행 공사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은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 주장의 미이행 공사가 이 사건 공사에 포함됨에도 이를 시공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원고 주장의 미이행 공사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이 15,300,000원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차임의 이종지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4쪽 13행부터 제5쪽 1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미이행 공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 주장의 미이행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가 G회사에게 원고 주장의 미이행 공사 등을 도급주어 결국 공사대금이 8,500,000원 증가하게 되었는바, 이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원고의 손해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8,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주장의 미이행 공사가 이 사건 공사에 포함되었다거나 원고 주장의 미이행 공사대금이 이 사건 공사대금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2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조정신청서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1. 6.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12. 15.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원고는 2021. 3. 12.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는데(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5다22496 판결 등 참조), 조정신청서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반소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이 부가가치세 7,450,000원을 포함하여 총 81,950,000원인데, 원고가 그중 68,0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3,9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공사대금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총 공사대금은 74,500,000원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문구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대금은 74,500,000원이되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가 부가가치세 7,450,000원에 상응하는 돈을 추가로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68,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원(= 이 사건 공사대금 74,500,000원 - 기지급 공사대금 6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추가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6쪽 18행부터 제7쪽 10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원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 주장의 미이행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함에 따라 공사대금이 8,500,000원 증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8,5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미지급 공사대금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2)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증가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 완료일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21. 11. 2.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 12.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나머지 반소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기현

판사윤영수

판사서동인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이 74,500,000원이고 기지급 공사대금이 68,000,000원이며, 피고의 미지급 공사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이 15,3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초과지급된 공사대금이 8,500,000원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원고 주장대로 초과지급된 공사대금을 계산해 보면, 8,800,000원{= 미지급 공사에 상응하는 공사대금 15,300,000원 - 6,500,000원(= 이 사건 공사대금 74,500,000원 - 기지급 공사대금 68,000,000원)}이 되나, 원고는 기지급 공사대금 반환 청구의 청구금액을 일관되게 8,500,000원으로 기재하였는바(2021. 10.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2022. 1. 25.자 준비서면 등), 원고는 초과지급된 공사대금 8,800,000원 중 8,500,000원에 한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 것으로 본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1,24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있으나, 원고는 위와 같은 손해배상채권 외에도 피고에게 공사대금 증가로 인한 8,5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자동채권으로 피고의 미지급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밝혔는바(2022. 10. 31.자 준비서면 등), 원고는 공사대금 증가로 인한 8,5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 한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